

1. 개정이유

국내 기업의 방산수출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개정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수출예비승인 및 국제입찰 참가승인 관련 예외사유 확대(안 제57조)

1) 현재 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수출예비승인 또는 국제입찰참가승인을 1인에게만 승인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복수 승인을 허용하고 있음.

2) 수출 시 국내업체 간 출혈경쟁을 방지하고 방산기술 등의 유출을 방지하는 데 제도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사인 간 경쟁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조치로 인식되고 방산수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그 사유를 확대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에게 승인할 수 있다.

제57조제4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구매자가 구매품목의 정확한 규격을 결정하지 아니하여 2인 이상의 자가 각기 특성을 달리하는 국내생산 품목으로 신청한 경우
2. 구매국에서 방위사업청장에게 2인 이상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3. 국방과학기술의 유출 가능성이 작거나, 국내업체 경쟁 제한 필요성이 없는 경우 등 방위사업청장이 2인 이상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